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09. 9. 15.

행정위원회

## 1. 審 査 經 過

가. 발의일자 : 2009년 9월 3일

나. 발 의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9월 8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9. 9. 9) 상정 의결

##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 제 案 說 明 者 : 행 정 국 장 송 요 출 )

### 가. 제안이유

- 관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업성적 및 재능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이의 구성·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장학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행정국장
-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계획 및 결산,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 지역인재 장학금을 마련하여 거주지와 상관없이 영등포구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서울시 타구에서도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0년부터 실시예정인 고교 선택제 도입으로 우리구에서도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근거로 영등포구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학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교육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되나
- 안 제13조(장학금의 종류)의 조문 관련  
「교육기본법」 제2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 등을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결정한 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34 호
----------	---------

제출연월일 : 2009. 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 1. 제안이유

관내 우수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업성적 및 재능이 우수한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교육기반 조성과, 이의 구성·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장학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위원장 : 부구청장, 부위원장 : 행정국장

다.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계획 및 결산,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 사항을 마련함(안 제7조)

라. 지역인재 장학금을 마련하여 거주지와 상관없이 영등포구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제1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

나. 예산조치 : 2010년 예산반영 예정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09. 7.23 ~ 8.12(20일간))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과 구 소재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역의 우수한 인재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장학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구의 타 기금 또는 회계에서의 전입금
3. 기금 예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장학금 지급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 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장학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분청 공무원중 국장급이상 2명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학식과 덕망이 있고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중 7명 이내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 ,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대상의 선발 및 지급 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성명, 심의안건과 심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장학기금 업무관련 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적우수장학금

2. 지역인재육성장학금

3. 특기장학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제14조(장학생 자격)** 장학생은 가족과 함께 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지역인재 육성 장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급금액과 시기는 매년초 정기회의때 결정한다.

② 장학금의 지급 연한은 1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영등포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보호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
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